

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한여울초등학교

I 추진 근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202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계획」

II 추진 목적

- 교권 확립과 스승 존경으로 교원의 자긍심 고취
-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II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가. (근거)

- 「교원지위법」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나.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강화로 책무성 강조

다. (금지) 교육활동 침해사안 축소·은폐 금지(징계 의결 요구)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 제2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2023.10.11.)] 제4조 제2항의 책무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나.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 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마.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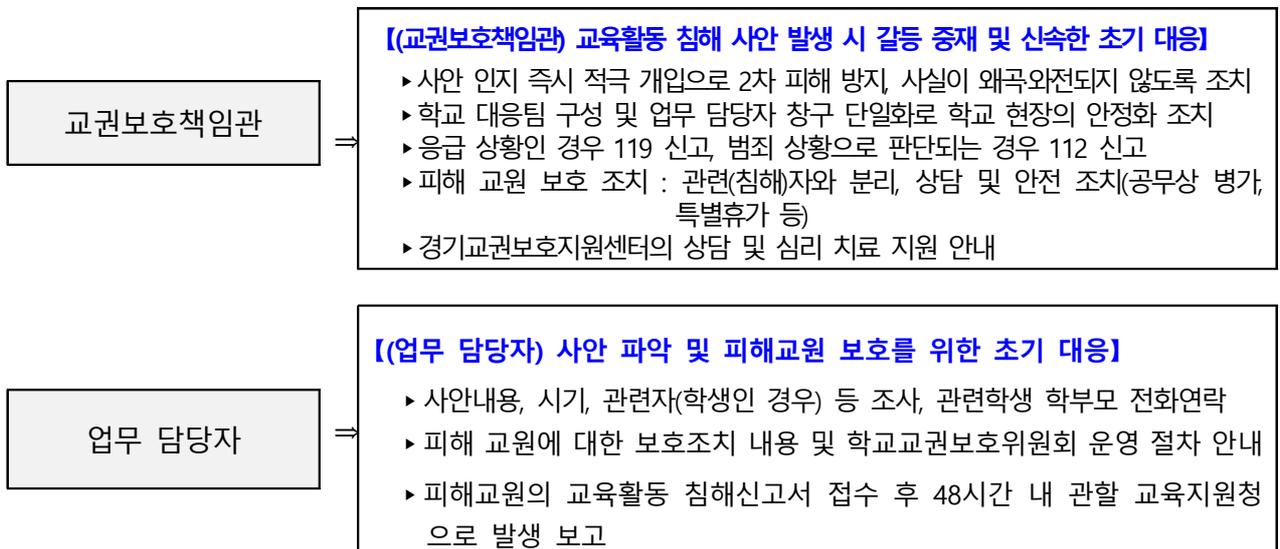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가. 구성
 -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4.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

- 가.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성 부여
- 나. 구성 및 역할



IV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가. 근거

- 「교원지위법」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제5조(심의 등)

나. 목적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강화

다. 방법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 길라잡이」에 따라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문제 해결
- ※ 사안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와 유선 협의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고발 대응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발생보고】

-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보고서>(서식1)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보고(k-에듀파인)

【결과보고】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결과 보고서>(서식4)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보고(k-에듀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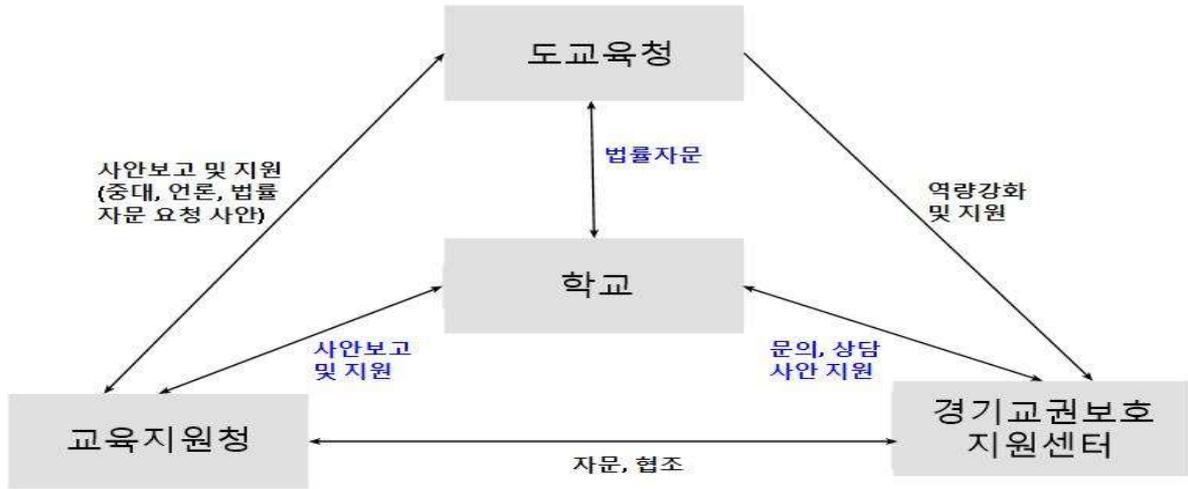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사안 축소·은폐 금지】

- ▶ **피해 교원의 개최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개최한 경우** 도교육청 현장 컨설팅 및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사안 축소·은폐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심의
- ▶ 사안 축소 은폐 시 감사청구, 고충청구 등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보고 및 지원 체제>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문의 상담 지원 가능

2.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및 정족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나.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 16조)

제척	회피	기피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p>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교보위 심의에서 당연 배제되므로 학교교보위 개최 이전에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출석 요청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는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당사자의 기피 신청 있는 경우 학교교보위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사유가 있는지 심의하여 기피 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함. • 기피사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함. (다만 출석위원에는 포함.) • 기피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기각함.
<p>제척 등 사유있는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재적위원 총5명, 출석위원 4명, 출석위원 중 1명이 기피 결정되어 총 3명이 된 경우 : 기피 결정된 위원도 개의((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개의정족수 4명(재적 2/3출석) 충족함. 그러나 기피결정된 1인은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되므로 기피결정된 1인을 제외한 위원 3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p>		

다. 회의 진행 과정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 준용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 조치 주체 : 학교장

나. 절차 (교원지위법 제18조제5,6항)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 학교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또는 침해학생의 학부모, 조부모등과 같이 가족관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법률대리인(변호사)은 참석 및 진술할 수 없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3)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관련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의 참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다. 조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된 경우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2)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할 수 없음. 다만,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3)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의결서(서식9-1 참조)작성 → 학교장에게 통보

4)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호~5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6호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계산	14일 이내
7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라. 조치 시 유의점

1) 특별교육, 심리치료 (교원지위법 제18조제2, 3, 4항)

- ① 6호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쳐야 함.
- ② 1, 2, 4, 5호 조치를 내릴 경우 3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음.
- ③ 학부모 참여 필수(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미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수 시간을 정하여 조치함.

2) 출석정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일수를 정하여 조치함.

3)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기준(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고려

마.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1) 침해학생의 불복 방법

- ① 전학, 퇴학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불복절차와 동일)

② 그 외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2) 피해교원의 불복 방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교원지위법령에 피해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함.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조치없음’결정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바. 교육활동 절차 흐름

절차	내용	유의점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상황인 경우 112 경찰 신고 -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활동 침해행위 명백한 경우 즉시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피해 교원 :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는 피해교원이 작성·접수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접수 취합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축소, 은폐 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리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의 신고서 접수 및 침해학생에게 확인 → 피해교원의 신고에 대한 침해학생 진술(의견)서 취합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접수 및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해당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자유지원센터로 절차 문의, 법률상담, 현장지원 요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여부 표시 ■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의사(중국적 화해의사)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조정 절차 흐름 참고) ■ 조정 성립시 : 사안 완전히 종결 ■ 조정 불성립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성립 시에는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하지 않고 사안 종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로 진행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 침해 학생 : 조치 심의 및 결정 - 피해 교원 : 보호 조치 심의 및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으로 진술
학교장 조치 및 불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조치 → 조치통보 ■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 및 퇴학 :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학교장 조치 : 행정쟁송(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치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조치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결과” 보고 (사안 발생 보고는 하지 않음.)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외부기관	2호	8~10
연계선도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5호
	교외	6호
		7호
		11~13
		14~16
		17~21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준수사항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2019.10.17.이후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말함.**
준수사항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은 **2019.10.17.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을 의미함.**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가. 분쟁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10조)

- ①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분쟁 조정은 화해로 종국적 사안 종결하는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은 소송 제기는 아니나 종국적인 화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분쟁 당사자간 고소·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해당)
- ③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해·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침해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조정 신청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나. 분쟁 조정의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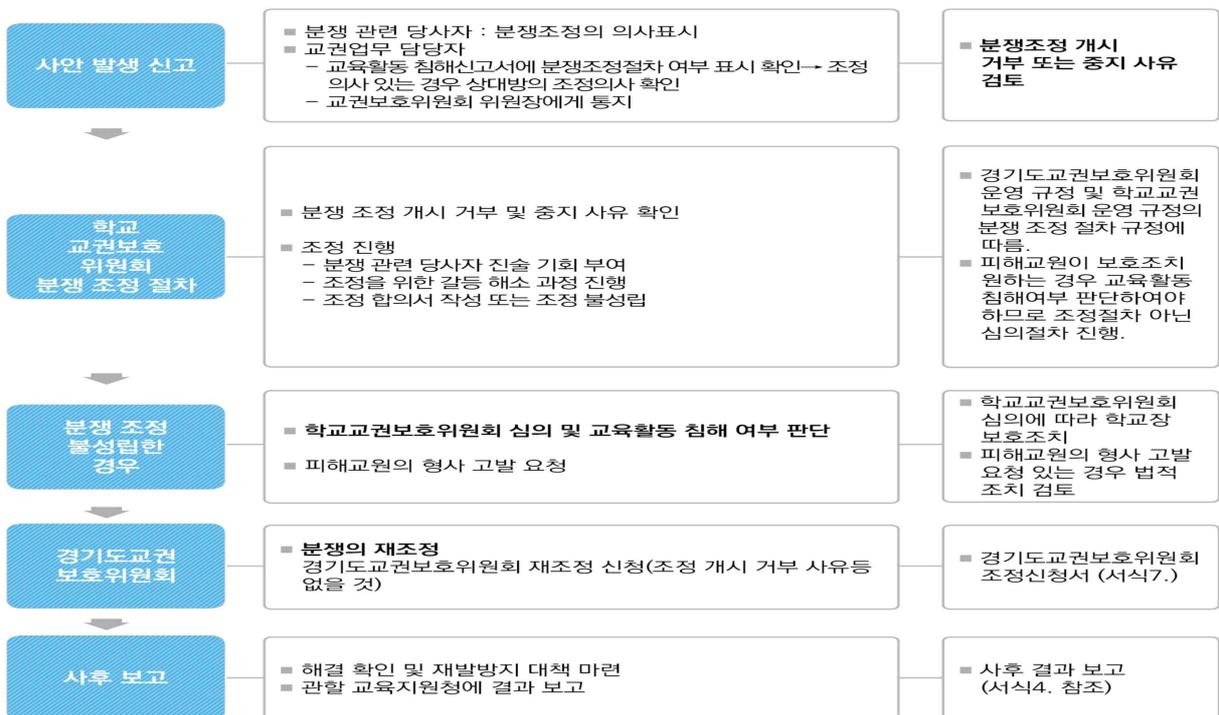
① 분쟁 조정의 성립

-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화해하여 완전히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공개 사과, 사과문 낭독 등의 행위는 불가(인권침해 소지 있음.)

② 분쟁 조정의 불성립

-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피해교원으로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의 재조정 신청을 한다. 다만,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조정 절차 흐름



V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1.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가. 보호조치의 주체(교원지위법 제15조 제 1항)

- 1) 관할청
- 2) 유치원의 장
- 3) 각급 학교의 장

나. 보호조치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4) 특별휴가 (법제14조의3)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조치의 내용을 심의한다.

2.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가.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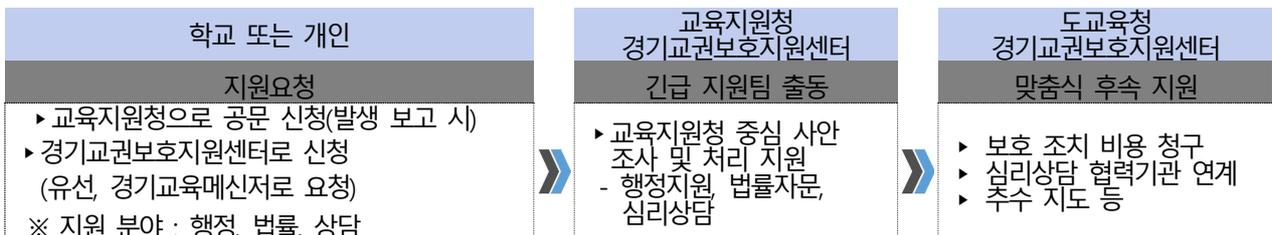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나.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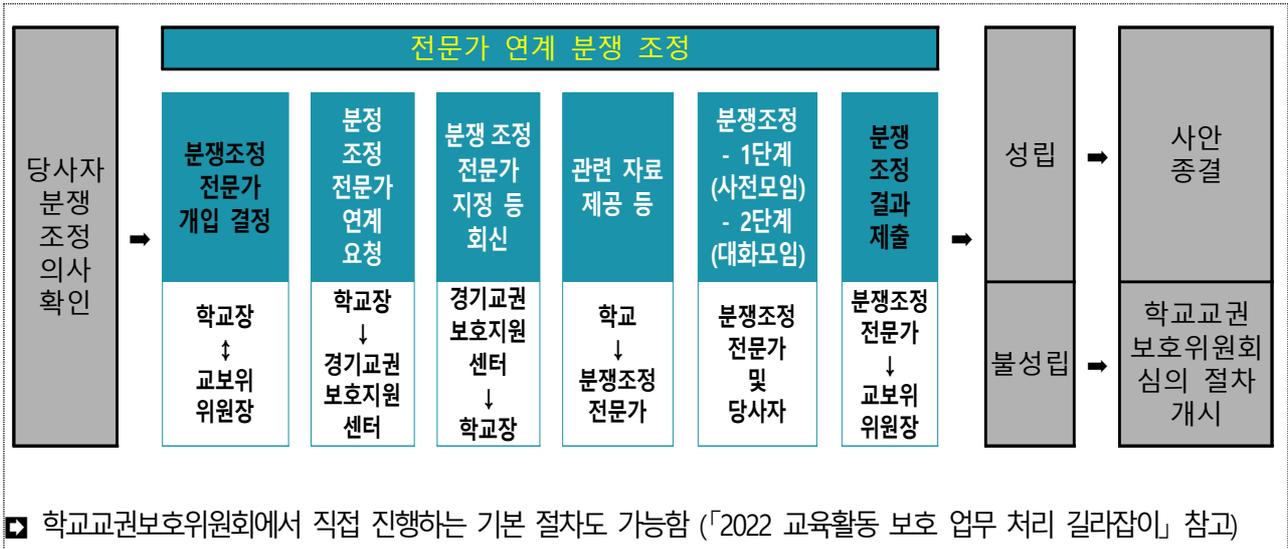
▶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통합 지원(행정지원,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도교육청(변호사)+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장학사, 상담사)+교육지원청(장학사)이 한팀이 되어 학교로 방문하여 지원하는 방식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신청서 공문 제출(k-에듀파인,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 지원 한도 :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비용 지원(건당 60만원)
-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절차



- ※ 양 당사자 분쟁 조정 등의 의사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지원 가능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한 교원이 심리상담을 희망할 경우, 교원의 회복과 복귀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협력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 협력 기관 : (남부)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17명) (북부) 한국 회복적 정의 협의회 KOPI(10명)

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어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기간제 교원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2) 공무상 병가

- 6월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2019.4.)]
-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 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월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마.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비정기 전보 요청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

제15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경우 정기전보일에 실시하고 교육상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로 하며, 9호부터 1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9. 교원 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바. 피해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1) 초기 심리상담 및 협력 기관 연계

- 상담신청서 제출(공문)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상담사 초기 심리상담 → 협력기관 연계 → 개인 상담 → 추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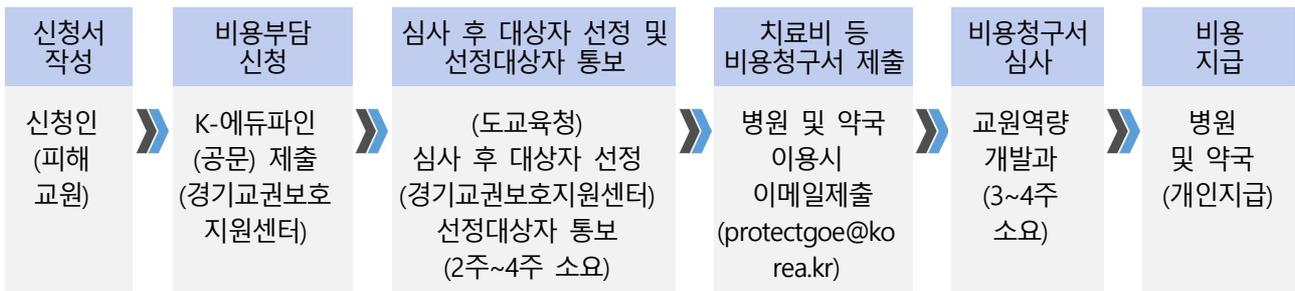
※ 부득이한 경우, 초기 상담 없이 피해교원이 직접 상담·심리 협력기관 이용 가능

2)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지원 항목 : 협력기관 이용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 지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이내

※ 보호조치 비용부담 지급 후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침해자(침해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 행사

- 비용 신청 및 지급 방법



【비용청구서 제출 방법】

▶ 심리상담 협력기관 이용(기관청구)

심리상담 비용은 경기도교육청 심리상담 협력기관 이용 시에만 비용 지원 가능하며, 협력기관 이용 시 협력기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비용을 청구함

▶ 병원 및 약국 이용(개인청구)

병·의원 진료 및 진료에 따른 약국 이용 시 피해교원이 납입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비용을 청구함(이메일 제출 : protectgoe@korea.kr)

3) 구상권 행사의 예외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 라) 보호자 등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
- 마) 그 밖에 교육활동보호조치 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 교권 전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상담 지원

-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권보호팀 내 교권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제공
(경기교육 메신저, 학교 방문, 도교육청 내방, 원격화상,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법률 자문 가능】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chrome 접속)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온라인 법률 자문
- 온라인 교권침해 상담 및 방문 상담 예약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각종 자료

아.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자문 지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교육활동 침해 유형의 형사법적 판단 등)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자문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law.goe.go.kr/>) - 온라인법률자문서비스 - 법률자문신청(태블릿 PC, 스마트폰 이용 가능)
- ※ 교권침해 관련 자문인 경우 3일 이내 회신 가능

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운영 (2023.3.1. ~ 2024.2.29.(12개월))

▶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제 경비 부담을 핵심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특정 직종이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임

- 법률상 배상청구된(피소) 사고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원, 형사¹⁾ 최고 5천만원까지

1) **형사**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된 경우에 해당(단, 제17조 제 3, 5, 6호만 해당)

VI 교육활동을 침해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V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1. 상해와 폭행

가. 상해

①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나. 폭행

①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목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③ 유의점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협박

가.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가족 등 제 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다.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3. 명예훼손 및 모욕

가. 명예훼손

1)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판 2004도2880)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나. 모욕

1)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OO 같은 OO놈', 'OO년', 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 모욕죄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관할청에서 고발할 수 없으며 피해교원의 고소를 요한다.

4. 손괴

가.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5.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가. 개념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6. 불법정보 유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1) 개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카카오톡 메시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3)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1) 개념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7.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가. 개념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8. 업무방해(사립학교의 경우)

가. 개념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낙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9.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이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07두22498)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 육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행위
-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쉬는 시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한대!’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경우
 - 수업 시간에 성매매 관련 동영상 시청한 이후 교사가 설명하는 중 학생이 교사에게 “경험담?” 이냐고 한 경우
-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일을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1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법령 위반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서 학교생활을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6조)

다. 관련 법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Ⅷ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타 대응 방안

1. 형사소송(고소 및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 의사를 밝힘.
 -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짐
 - 모욕죄 등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고 고발할 수 없음.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교육청의 고발 의무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
 - 피해 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형사고발 요청서 접수 (서식8 참조)
 - 학교의 장은 피해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권 보호팀으로 공문으로 접수.
 - 피해 교원의 고발요청서, 증거자료,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관할청이 고발여부 결정

2.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유의 사항
 - 소장(가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반드시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짐

3. 소년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됨. 이러한 경우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 방법
 - 학교장이 가정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²⁾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임
- 장점
 -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관련 법조항
 -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가. 죄를 범한 소년
 - 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IX 교육활동 보호 교육 계획

1.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2. 목적 :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권 존중 문화 조성

3. 대상 :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2)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음

4. 방법 : 대상별 연 1회 이상 의무

가. 교직원 교육 일정 및 내용

- 교육 시기 : 교직원 협의 시간을 활용하여 1회 실시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나. 학부모 교육 일정 및 내용

- 교육 시기 : 2024년 3월 19일(화)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연수 자료(홈페이지에도 게시)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다. 학생 교육 일정

- 교육 시기 : 학년별·학급별 교육과정에 의거 실시(업무담당자가 교육 자료 예시 안내)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

라. 교권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 활동 시기 : 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 결정(연 1회 이상)
- 활동 내용 :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교권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실시

X 기대효과

-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밀착 대응 및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